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396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0. 4. 1.

4. 회부일자 : 2020. 4. 6.

Ⅱ. 제안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1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현황

구분	규모(㎡)	총계(건)	재정비(안)		비고
			존치	해제가능	
학교	329,720.5	29	29	-	

2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단계별집행계획

구분	총계		1단계		1,2단계		2단계	
	건수	금액 (백만원)	건수	금액 (백만원)	건수	금액 (백만원)	건수	금액 (백만원)
학교	29	1,869,072	7	365,855	10	565,462	12	937,755

Ⅳ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의견청취안은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96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의견청취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)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국토계획법 시행령”)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안건 제출 배경

○ 현행 「국토계획법」 제85조[1]에는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고시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95조[2]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[3]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

---

1)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**2년 이내**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2) 제95조(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3) 「국토계획법」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①~④생략
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부칙<2017.9.19.>
제2조(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정되어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동 의견청취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이 있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
[그림]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절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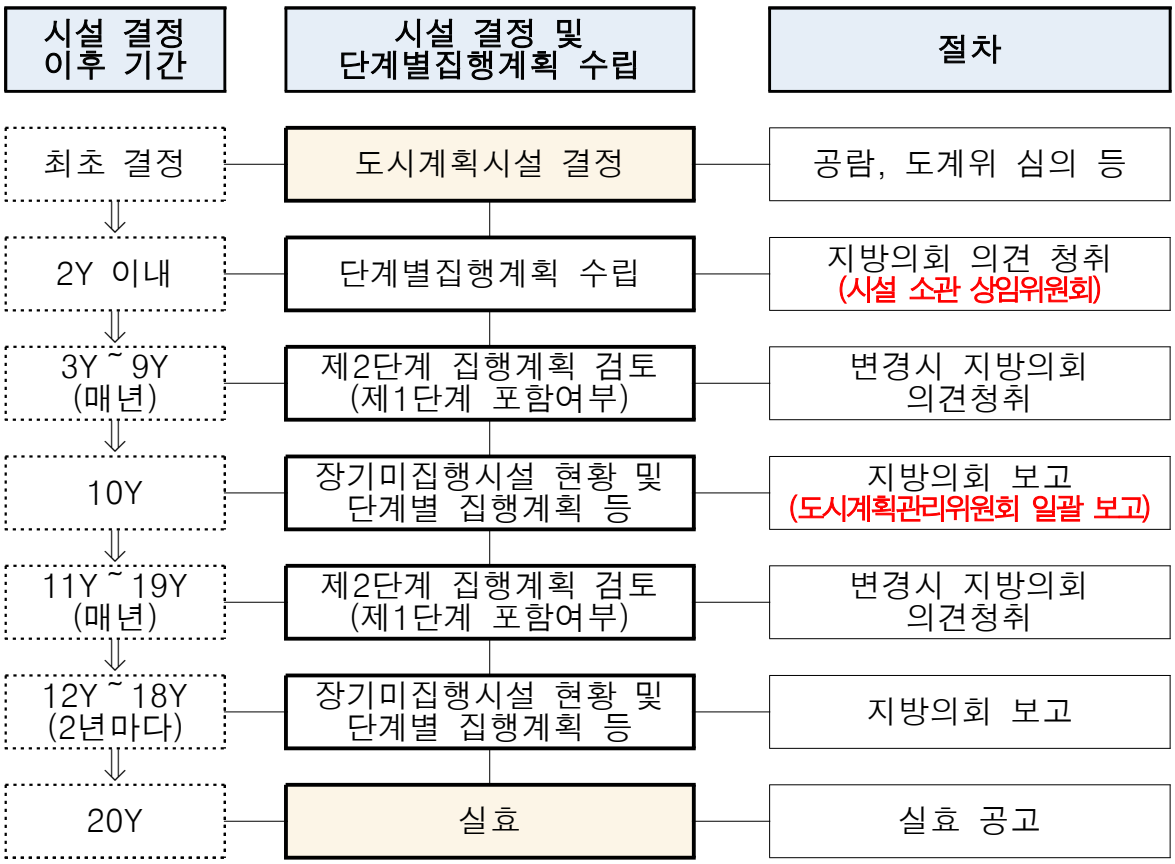

나. 안건에 대한 의견

○ 동 건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은 현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구분되어 있는 전체 43건 중 학교설립소요가 미흡하여 해제가능한 부지 13곳과 이미 공고가 완료된 1곳[4] 등 14곳을 제외한 총 29건의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4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(서울시고시 제3561호)

[표-1]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현황

부지결정 경과기간	부지면적(㎡)	부지합계	추진계획		
			(설립)추진중	(설립)검토중	계획없음
20년 이상	139,737.3	12개소	1개소	4개소	7개소
10 ~ 20년	161,085.1	15개소	2개소	7개소	6개소
10년 이하	173,844.0	16개소	13개소	3개소	-
총 계	**474,666.4**	**43개소**	**16개소**	**14개소[5)]**	**13개소**

○ 동 건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29건은 이미 기존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었으나, 사업기간의 지연, 위치 및 면적의 변경, 조합의 기부채납과 SH 무상공급 금액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의 이유로 단계별집행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(〔붙임〕참조).

○ 다만, 동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대상이 되는 곳으로는 '강남구 일원동 737'을 포함하여 총 5곳이 있습니다.

그러나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(18-0068)[6)7)]에 따르면 '부지 조

사업개요				계획기간중 사업비 (2018~2025)													
사업명 (위치)	사업 기간	사업 규모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집행방식별 사업비 (백만원)							단계별 사업비 (백만원)						
				총계	재정적				비재정적		1단계			2단계			
					국비	시비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'20	'21	'22	'23	'24	'25년이후	
한남동 665-9	2023~	10,775.4	90,849	90,849	-	-	-	-	-	90,849	-	-	-	90,849		-	

5) 검토중인 14개소 중 2020년 1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공고 완료된 부지(한남동 665-9) 1개소 제외

6)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(18-0068), 2018.4.24.
~<중략>~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, 이 사안과 같이 시행자가 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,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「도시계획법」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,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인가가 의제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,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"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"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

7) 국토교통부「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」, 서울시장기미집행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에서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영하고 있음.

성만을 위한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'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[8]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는 해석례가 있는바, 상기한 5곳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존치하려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2] 실효시기 해당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현황

연번	위치	면적(㎡)	결정고시일	재정비(안)	단계별 집행계획	실효 시기
8	강남구 일원동 737(산 63-1)	12,291.6	1990-02-02	존치	1단계	2020
13	서초구 잠원동 71-10	11,608.0	1986-05-17	존치	1·2단계	2020
14	서초구 잠원동 61-6, 18	10,556.1	1986-05-17	존치	1·2단계	2020
16	노원구 하계동 256-1	10,933.0	1989-09-26	존치	1·2단계	2020
25	강남구 압구정동 423,424	14,999.8	1981-07-07	존치	2단계	2020

○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총 29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바, 총 32만 9,720.5㎡의 규모에, 시비(교부금, 자체재원) 7,999억 2천 8백만원과 민간투자 671억 3천만원, 공공기여(기부채납) 1조 20억 1천 4백만원 등 총 1조 8,690억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2025년까지 단계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
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해당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--

8) 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

[표-3] 단계별 집행계획(안)

(단위: 백만원)

총계		1 단계 ('20년~'22년 완료)		1,2단계 ('21년~'24년 완료)		2단계 (25년 이후 완료)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29	1,869,072	7	365,855	10	565,462	12	937,755

□ **이상으로「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 의견청취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[붙임] 단계별집행계획 세부 변경 내역

연번	명칭 및 주소	세부 변경 내역
1	**[강빛초]** 강동구 강일동 120-4일원	**[사업기간]** ○ '18~'19년 분할 집행 → 20년 일괄 집행 ※ SH공사 부지,시설의 무상양여
2	**[강빛중]** 강동구 강일동 473-4 일원	**[사업기간]** ○ 종료시기: '21년 → '20년 ※ 공사 진행을 고려한 집행 시기 조정
3	**[거암초]** 송파구 거여동 산49	**[사업비]** ○ 29,936백만원 → 32,592백만원 ※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 등을 위한 금액 변동 **[사업기간]** ○ '20년 → '21년 ※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한 집행 시기 조정
4	**[거암중]** 송파구 거여동 산50	**[사업비]** ○ 27,267백만원 → 31,686백만원 ※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 등을 위한 금액 변동
5	**[양원초]** 중랑구 망우동 306-37	**[사업비]** ○ 47,38백만원 → 49,000백만원 ※ 교부금 기준 상향에 따른 금액 변동 **[사업기간]** ○ '21년 → '22년 ※ 입주시기 및 공사현황을 고려한 집행 시기 조정
6	**[수서역세권]** 강남구 자곡동 102 일원	**[사업비]** ○ 42,971백만원 → 64,243백만원 ※ 사업계획 수정 등에 따른 금액 변경
7	**[둔촌일초,중]** 강동구 둔촌동 180-1일원	**[사업비]** ○ 141,673백만원 → 135,486백만원 ※ 사업계획 수정 등에 따른 금액 변
8	**[대모초(증축)]** 강남구 일원동737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서울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
9	**[산빛초]** 송파구 장지동 17	**[사업기간]** ○ '20년 → '23년 ※ 학교부지 토양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설립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30,414백만원 → 32,580백만원 ※ 사업계획 변경 및 교부기준 상승에 따른 금액 변경
10	**[강현초]** 강동구 강일동 산 22-101 일원	**[사업기간]** ○ '21년 → '23년 ※ 주택개발사업 시기변경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55,484백만원 → 50,360백만원 ※ 학교설립 계획(규모) 수정에 따른 금액 변경

연번	명칭 및 주소	세부 변경 내역
11	**[흑석뉴타운]** 동작구 흑석동 60	**[사업비]** ○ 56,926백만원 → 67,130백만원 ※ (사립)후기고 이전 검토결과를 감안한 금액 변경
12	**[구룡2초]** 강남구 개포동 산156-2일원	**[사업비]** '18년 고시 신규지정 ○ 33,421백만원 → 20.815백만원 ※ 개발사업 계획을 반연한 학교설립 규모를 감안한 금액 변경
13	**[청담고(이전)]** 서초구 잠원동71-10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서울시 조치에 따름
14	**[경원초]** 서초구 잠원동61-6,18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서울시 조치에 따름
15	**[거마초]** 송파구 마천동613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서울시 조치에 따름 **[주소변경]** ○ 마천동 267-14 → 마천동 613 ※ 주소변경
16	**[중계재개발]** 노원구 하계동256-1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서울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
17	**[방배2초]** 서초구 방배동 974-3	**[사업비]** ○ 38,386백만원 → 69,999백만원 ※ 공시지가 상승 및 학교설립 계획 등을 감안한 금액 변경 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→ '24년 ※ 주택개발사업 시기를 반영한 사업기간 변동
18	**[은평중]** 은평구 진관동 246-5	**[사업비]** ○ 20,528백만원 → 21,588백만원 **[사업기간]** ○ '20년 → '24년 ※ 학생배정 여건 검토에 다른 은평중 이전 시기 조정
19	**[강율초]** 강동구 강일동 53-1일원	**[사업기간]** ○ '21년 → '24년 ※ 학교설립 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**[사업비]** ○ 58,918백만원 → 58,408백만원 ※ 설립규모 및 교부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
20	**[강현중]** 강동구 강일동 473-4	**[사업기간]** ○ '21년 → '24년 ※ 개발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47,916백만원 → 50,133백만원 ※ 교부금 상향 및 설립규모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

연번	명칭 및 주소	세부 변경 내역
21	**[갈현1구역]** 은평구 갈현동 285-241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개발사업 계획 수정(사업지연 등)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29,318백만원 → 31,148백만원 ※ 교부금 변경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
22	**[북아현뉴타운]** 서대문구 북아현동544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개발사업 계획 수정(사업지연 등)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14,767백만원 → 15,365백만원 ※ 교부기준 증액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 **[학교부지 면적]** ○ 9,083㎡ → 9,069㎡ ※ 학교부지 면적 변경
23	**[이문휘경]** 동대문구 이문동 87-1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4년 시작 ※ 개발사업 계획 변경(사업시기 지연 등)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33,319백만원 → 42,184백만원 ※ 교부기준 증액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
24	**[미아재정비]** 강북구 미아동 438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4년 시작 ※ 개발사업 계획 수정(사업시기 지연 등)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45,276백만원 → 26,451백만원 ※ 학교설립 계획변경(중학교 신설 취소)에 따른 사업비 변경 - 중학교 설립 소요 미흡에 따른 중학교 설립 취소, 초등학교(유치원 포함) 이전
25	**[압구정지구단위계획]** 강남구 압구정동423,424	**[고시주체 변경]** , '20년도 고시 추가 ○ 서울시청(시설계획과) 고시 → 서울시교육청(학교지원과) 고시 ※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서울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
26	**[가좌초]** 서대문구 북가좌동 80-36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개발사업 계획 수정(사업시기 지연 등)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 **[사업비]** ○ 32,247백만원 → 35,596백만원 ※ 교부기준 증액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
27	**[반포2초]** 서초구 반포동 1300 일대	**[사업기간]** '18년 고시 신규지정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서울시 조치에 따름 **[사업비]** ○ 138,996백만원 → 209,239백만원 ※ 교부기준 증액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 - 재건축조합 소송진행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

연번	명칭 및 주소	세부 변경 내역
28	**[반포2중]** 서초구 반포동 1305 일대	**[사업기간]** '18년 고시 신규지정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서울시 조치에 따름 **[사업비]** ○ 138,996백만원 → 209,239백만원 ※ 교부금 변경 및 공시지가 상향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 - 재건축조합 소송진행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
29	**[거마중고]** 송파구 마천동223	**[사업기간]** ○ '23년 시작 → '25년 시작 ※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

관 계 법 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약칭: 국토계획법)

[시행 2020. 3. 24.] [법률 제17091호, 2020. 3. 24., 타법개정]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.

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국토계획법 시행령)

[시행 2020. 1. 1.] [대통령령 제30299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제95조(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
1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
3.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③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·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8. 11. 13.>

④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,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
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